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00
------------	------

제출년월일 : 2005. 6. .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1. 제 안 이 유

-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는 문화 정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구 명서동 사무소를 리모델링 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함
-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미래지향적인 감각에 맞게 「제천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제명을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를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앞으로 늘어나는 청소년 시설을 널리 활용 할 수 있도록 함

3. 근 거 법령

- 청소년 기본법 (법률제7162호 2004. 2. 9 전문개정)

4. 의 안 전 문 : 붙 임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첨 부 : 1. 기타참고자료(법령등) 사본 1부
 2. 입법예고 사본 1부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 2."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을 주이용 대상으로 청소년의 심신수양, 자질함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의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청소년공부방 등 법 제3조 제6호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 3."청소년수련관"이라 함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 4."청소년수련원"이라 함은 숙박시설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 5."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함은 주로 청소년들의 문화, 정보,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 6."청소년야영장"이라 함은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을 말한다.
- 7."청소년공부방"이라 함은 주로 가정에 학습공간이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습 공간을 제공 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청소년과 일반인이 혼합된 단체의 구성원은 일반인으로 한다.

제3조(시설 운영) ①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가 직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하여 수탁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뒤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하게 한다.

④위탁 또는 임대시에는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제4조(이용대상) 시설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단체 등 일반인 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을 이용토록 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시간) ①시설의 개방시간은 년중 매일 09:00-22:00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들의 이용률과 청소년들의 욕구를 감안하여 관리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 신정·설 연휴, 추석연휴는 휴일로 한다.
 ②시설의 이용승락을 받은 자는 승락된 시간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이용신고) ①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용 허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를 징수 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이용을 승낙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이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허가를 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불일 수 있다.

제7조(이용허가 우선순위)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개단체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문화·체육·공연·전시 등의 행사
4. 기타

제8조(이용허가 취소) ①시설 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이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이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이용제한대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타 관리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제1항 각호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시장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이용료의 징수) ① 시설을 이용허가 하는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이용료를 이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② 제5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마다 100분의 20을 가산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의 감면)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우
2. 청소년 단체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를 할 경우
3.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공식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4. 청소년수련관 유료 이용시 제천시민은 50%를 감면한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때
3. 이용예정 전일까지 미리 신고하고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2조(이용자 책임) ① 이용자는 시설, 설비, 물품, 자료 등을 손실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설비, 물품, 자료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이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기간 만료 또는 이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이용자는 이용허가기간 만료전에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자의 권리)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에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내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①시장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경우에는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관리) 시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개발원, 청소년단체 등에 시설을 위탁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 "수탁자"라 한다)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에 대하여는 수탁자 부담금 및 시설 이용료,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청소년들의 수련 및 자기개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받은 사용재산 및 보조금을 시설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동지번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제천시에 기부체납 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의 이용에 있어 제천시 청소년 및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계획 및 승인) ①수탁자 등 시설 운영자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계연도 개시 20일 이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정부 또는 시의 시책에 어긋나는 경우 이에 대한 수정을 가할 수 있다.

제19조(수입지출) ①수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시설 운영비 보조금과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지출은 시설 운영계획에 의거 소요되는 경비중 년간 예산서에 의해 지출한다.

③현금출납은 책임자와 출납원을 지정하고 지출을 위한 현금출납부 및 총계정원장, 보조부와 지출증빙서를 구비하고 기타 장부를 비치하여 지출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수탁자 등 운영자들은 지출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편성 및 운영) ①매회계 년도 개시 45일전에 시장은 시설에 대한 예산 편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탁자 및 운영자는 제1항의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안을 작성하여 매회계 년도 개시 20일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결산보고) 결산보고는 매회계 연도 종료 15일 이내에 사업계획에 의한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기본법, 지방세법 및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청소년시설 이용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제천시 청소년시설 이용료

시설별	기 준	이용료	적 요
강당/체육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8시간 이내) ◦ 1일(4시간 이내) 	80,000원 40,000원	1. 매시간 초과시마다 이용료의 20/100가산 2. 냉난방기를 사용할 때에는 기본료의 20/100가산 3. 무대조명·무대음향을 사용할 때에는 20/100을 각각 가산
소극장/다목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8시간 이내) ◦ 1일(4시간 이내) 	60,000원 30,000원	
기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8시간 이내) ◦ 1일(4시간 이내) 	20,000원 10,000원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박은 당일 12:00~다음날 12:00 까지임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시설이용(변경)허가 신청서

①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성명(단체명)			주민등록번호	
②이용인원	계	남	여	③이용자구분	학생(초,중,고,대학생)일반인,유치부,기타
④이용목적					
⑤이용시설명					
⑥이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⑦변경신청내용					
⑧변경신청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⑨이용요금 (인원수×요금)					
⑩첨부					
⑪비고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시설이용(변경)허가서

허가번호	번					
①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성명(단체명)					주민등록번호
②이용인원	계	남	여	③이용자구분	학생(초,중,고,대학생)일반인,유치부,기타	
④이용목적						
⑤이용시설명						
⑥이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⑦변경신청내용						
⑧변경신청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관계 법령 발췌

청소년기본법

【법률 제7162호 2004. 2. 9 전문개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한다.
6.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18조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의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수련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수 있다.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1999. 6. 21]
[조례 제385호]

개정 2000. 12. 30 조례 제478호

개정 2003. 10. 17 조례 제60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건립한 제천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수련관은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산10-13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 수련관에 두는 시설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업무) 수련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양한 수련거리의 개발 및 수련활동의 운영
2.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문화사업
3. 청소년지도 및 상담활동
4. 청소년 정서 함양
5. 기념행사 및 문화·체육활동 등의 장소제공
6. 기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3.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6조(공무원) ①수련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운영) ①시장은 수련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7조 및 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수련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하여 수탁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하여야 한다.

③위탁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에게 수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이용대상) 수련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 이용함을 위주로 하되 기관·단체 및 일반인으로부터 이용신청이 있을 때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련관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00. 12. 30>

제11조(이용시간) ①이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표2에 의한 이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연장한 매 시간초과시마다 20/100을 가산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 ①수련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3에 의한 이용료와 교재대, 외래강사 초빙시 강사료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이용료는 이용을 허가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관람료) ①수련관의 이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관람료는 입장권·예매권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며 관람권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하되 사전에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회별 좌석수의 20/100을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한다.

④이용자는 우대권 또는 초대권과 이와 유사한 무료입장권은 총 발행매수의 5%를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한다.

제14조(이용료의 특별징수) ①유료 관람권 발행시 관람료 총수입금액의 20/100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2조제1항의 이용료 금액에 미달할 시 별표3의 기준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이용료 징수를 위한 시설이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분할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제2항의 이용료는 익일 오전중까지 정산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미 회수된 관람권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제15조<삭제 2000. 12. 30>

제16조(이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경제적, 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의 이용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7조(이용료) 이미 받은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 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할 때는 이용료의 80%를 반환한다. <개정 2003. 10. 17>

제18조(보증금) ①이용자는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 매출예정총액의 20%를 현금으로 시금고에 사전예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증금은 이용자가 이용을 종료하거나 허가취소한 때에 이를 반환한다. 다만, 보증금은 제11조제2항의 추가이용료, 제14조 특별이용료, 제19조, 제20조 원상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③보증금의 납입은 제12조제2항과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이용자의 책임) ①시장은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관의 자료나 물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분실함으로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원상복구)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종단하고자 할 때에는 종료와 동시에 행사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이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1조 <삭제 2000. 12. 30>

제22조(이용종단 신고) 이용자는 이용허가 만료전에 이용을 종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강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수련거리개발 및 수련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강사의 보수) 강사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수탁자의 의무)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련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장비·기타재산을 수탁목적 및 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탁협약사항에 의한 시장의 명령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수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새로운 시설의 증·개축을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제천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수련관의 비품 및 물품에 대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6조(지도감독) ① 수련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기본법·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존속기한) 이 조례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26조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0. 12. 30 조례 제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17 조례 제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999.7.15 조례 제441호]

개정 (2001. 3. 9 조례 제513호)

개정 (2004.10. 5 조례 제60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동구청소년수련시설(이하 "청년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01.3.9)

제3조(사업)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청소년 문화예술 창달 활동
2. 청소년의 심신단련 및 사회교육지도
3. 청소년 상담지도 및 선도
4. 청소년 정서지도 및 활동 지원
5. 기타 청소년 복지증진 및 이용자의 편의도모에 관한 사항(개정 2001.3.9)

제3조의2(운영의 원칙) ① 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수련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제4호 및 제 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과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3.9)

제4조(공무원) ①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에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휴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1.3.9)

제5조(이용 및 제한) ①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호와 같다.

1. 관내 거주하는 청소년
2. 청소년의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고 청소년 이용이 저조한 시간대에 한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일반주민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③ 구청장은 헬스장 등 상시 이용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01.3.9)

제6조(사용허가취소 및 정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케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무는 수탁자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1. 제3조 각호의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3항의 회원모집 및 회원권 발행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검사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4. 제14조의 사용료·강습료의 부과·징수·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본조개정 2001. 3. 9)

제9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04.10. 5)

제10조(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3조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면서 영업수익이 발생되는 경우에 영업 수익 전액을 제3조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1.3.9)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청소년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업무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지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청소년수련시설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때
6. 청소년수련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제14조(사용료·강습료) ① 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사용료·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책임인 경우 : 사용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사용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사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2.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 일할 계산한 금액
- ③ 구청장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한 경우 사용료의 수입과 제10조제2항의 수익을 수탁자로 하여금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동구관내 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3. 모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가정의 청소년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1급 내지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또는 그 가족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개정 2001.3.9)

제15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수탁 또는 사용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을 낼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한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개정 2001.3.9)

제16조의2(준용규정) ① 구청장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② 청소년수련시설의 수탁자가 예산·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또는 인천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3.9)

제1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3. 9 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인 청소년수련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운영중인 것으로 본다.

부 칙(2004.10. 5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공고 제 2005-235호

제천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12일

제 천 시 장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조 레 명 :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 앞으로 늘어나는 청소년시설을 널리 활용 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 제명을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를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 청소년시설의 정의(제2조)
-청소년을 주이용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청소년공부방등 시설을 말한다.
- 위탁관리(제15조)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시설을 위탁 관리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에 대하여는 수탁자 부담금 및 시설이용료,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5월 2일까지 제천시장(참조 복지사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0-5402, FAX640-5409 E-mail: jsk0718@hanmail.net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